

제429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3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기획재정부 소관
 - 국가데이터처 소관
 - 국세청 소관
 - 관세청 소관
 - 조달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공공자금관리기금
 - 국유재산관리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 복권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외국환평형기금
 - 기후대응기금

상정된 안건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 기획재정부 소관
 - 국가데이터처 소관
 - 국세청 소관
 - 관세청 소관
 - 조달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2
 - 공공자금관리기금
 - 국유재산관리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 복권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10시53분 개의)

○소위원장 정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후에 본회의 시간만 빼놓고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보증동의안은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건입니다만 한국장학재단채권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채권발행 규모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보증동의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 과정 등을 참고하여 11월 27일에 별도로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가데이터처 소관
- 다. 국세청 소관
- 라. 관세청 소관
- 마. 조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 라. 복권기금
-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바. 외국환평형기금
- 사. 기후대응기금

(10시55분)

○소위원장 정일영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를 알려 드리면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가 도출된 항목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뒤로 미루어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부처별로 심사가 종료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기재부 일반회계 예산안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정부출자수입에 대해서 서면질의가 있었는데요. 정부출자수입은 정부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배당액을 세입 조치하는 예산 항목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24년, 25년 각각 수납액이 예산보다 크게 발생을 했고 24년·25년 예산안 편성 시 예상 당기순이익 대비 예산안 편성 비율이 각각 18.4, 18.6인 점을 감안해서 11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증액 산출 규모는 1조 5649억 원이 김영진·박민규 의원실에서 계산한 예상 출자 수입이고요. 1조 4500억 원은 실제 26년도 예산안이니까 이 차액만큼은 증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위원님들이 내신 이 계산 산식에서 지난 2년간 과거의 평균적인 배당성향을 이번에 다시 그대로 곱하신 내용인데요. 실제 저희들은 통합한 배당성향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각 회사별, 각 공기업별 배당성향을 적용해서 합산한 숫자이지 총평균을 갖고 계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계산해 보면 현재 저희가 낸 예산액이 맞고요. 만약에 전체 평균 그것으로 계산해 버리면 실제로 그만큼 널 공기업이 없기 때문에 훗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 들어올 가능성이 큼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다 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결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박성훈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그렇게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페이지, 한국은행 잉여금입니다.

한국은행 잉여금은 한국은행의 당해 연도 당기순이익을 한국은행법에 따라 처분한 후에 잔여분을 차년도 정부 세입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단부 보시면, 2025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은 9월 말 기준 8조 5984억 원으로 24년 대비 초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고요. 연말까지 동일한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에 2025년 예상 당기순이익은 11조 5984억 원으로 이 중 70%가 정부 세입 처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예산보다 1조 70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한국은행 잉여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올해를

얼마로 볼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중의 70%를 저희가 갖고 오는 거는 정해진 내용이고요.

문제는 그전에는 한국은행이 본인들이 예산안 제출 시점에 올해 얼마나 될지 추계를 하면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게 항상 조금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방식을 저희가 바꿔 봤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면 6월까지 실제 일어난 당기순이익 월별 나온 게 있으면 그거를 다 구한 다음에 그거의 2배라고 저희가 해서 한은이 예상한 수익보다 더 높게 잡아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은보다 더 높게 잡았는데요.

다만 여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안을 내고 난 다음에 7월, 8월, 9월의 당기순이익이 또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보니 상반기보다 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2배보다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남은 10월, 11월, 12월, 석 달 치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9월까지 반영해서 좀 더 올릴지 아니면 6월까지 한 것의 2배로 하고 좀 지켜볼 건지 이 부분에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남은 3개월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 추이나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그게 악화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은 한은하고 다시 짚어 보시려면 짚어 봐야 될 겁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은 어려운데요. 7·8·9월의 경우에는 조금씩은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 얼마로 계산할지, 9월 것까지 계산해서 넣으실지 아니면 연말까지 다시 한번 전망을 해 보자 하실지 아니면 상반기에 안전하게 2배로 가고 나중에 실제로 내년에 좀 더 들어오면 추가로 잡을지 이 부분은 좀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결국 이거는 당기순이익 정확도를 얼마나 제고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기재부가 설명하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 자료까지 기준으로 해서 예측하는 것도 일견 타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기재부가 아무래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또 바꿨다고 하니까 그쪽에 힘을 실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이미 3개월 치로 환산했을 때 지난 6개월 가지고 나머지 곱하기 2를 한 것보다 또 약간의 여력이 생겼고, 앞으로 또 남은 3개월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 부정적으로 더 빠질 이유는 없어 보이니……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우리가 그래도 정확하게 세입을 계산해 놔야 향후에 국회에서도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다른 긴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부 원안보다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가지고 어느 정도의 추가 여력이 있는지를 다음번 회의 때 주시면 걱정한 것을 반영해서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박성훈 위원 그런데……

○소위원장 정일영 말씀하세요.

○박성훈 위원 한은 운용수익의 대부분이 아마 해외, 말 그대로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 이거든요. 미국 국채, 주식 그다음에 SDR 이런 식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서 나온 수익들 이라서요. 이게 미국시장의 어떤 영향을 받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경기가 또 나빠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확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따져 보면 어느 한쪽이 더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대안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6월까지 추세를 비교해 볼 때 7·8·9는 늘었으니깐, 7·8·9는 추세가 는 거니까 실제 발생한 것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3개월은 는 것을 집어넣지 말고 기존에 했던 거로 하면, 지금 1.7조 원 중에서 절반만 증액을 하면 7·8·9 늘어난 것은 반영이 되는 거니까……

○박홍근 위원 이 정도 선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정부 측이 그러면 받아들이는 걸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9월까지 이미 나온 거니까요.

○소위원장 정일영 나온 거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나온 것을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정부 측이 동의하는 걸로 하고.

박성훈 위원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리고 숫자는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요. 수치를 한번 뽑아 보시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7조 원의 50%로 이렇게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이 항목은 넘어가지요.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세물납주식매각대 항목입니다.

기재부는 넥슨 지주사 평가가치 4.7조 원의 80%를 올해 예산안 3.7조 원으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20%는 26년도 예산안에 1조 원을 반영하였는데 넥슨 매각에 대해서 올해는 사실 수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요. 그러면 내년에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26년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중에서 박민규 위원은 전체 100%, 넥슨 지주사 평가가치 4.7조 원을 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3조 70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얘기고, 임이자 위원안은 내년도는 80%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 차차년도에 20% 수준을 반영하자고 하면 지금 1조 원에서 2.7조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김영진 위원은 특별한 액수 제시는 안 하고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넥슨 주식이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지만 저희가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재는 최종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계속 진행은 할 계획인데 이거를 얼마를 잡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잡았는데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또 세입 이쪽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너무 작게 잡자니 매각 의지가 너무 없다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고민을……

저희는 정부안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 다 유찰됐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올해 현재……

○**소위원장 정일영** 작년에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올해부터 시작, 작년에 없었나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매각을 올해부터 하려고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80%, 내년 20% 이렇게 잡았는데요. 올해는 유찰이 되고 또 연말이 다가오니깐, 올해 매각 가능성이 없으니깐……

○**소위원장 정일영** 유찰 이유는 뭐예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강윤진** 국고국장입니다.

이게 비상장주식이고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소수지분이라서 이게 시장에서 일단 소화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넥슨이 배당이 낮은 배당, 배당 성향이 좀 낮아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높겠네, 그런 이야기면.

○**기획재정부국고국장 강윤진**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박홍근 위원** 그런 거를 검토하지 않고 현물로, 물납으로 이렇게 받은 거였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물납은 상속세 요건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이니깐.

○**기획재정부국고국장 강윤진** 상속세법에 따라서……

○**소위원장 정일영**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가능성이 매우 낮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의결권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 강윤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배당도 뭐 거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의결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대주주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지분 갖고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지요, 사실상.

○**소위원장 정일영** 영향력 행사가 안 된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이인선 위원** 대주주가 의결할 의지가 별로 없나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강윤진** 그러니까 경영권이 없는 소수지분이라……

○**소위원장 정일영** 소수지분이라는 얘기예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강윤진** 예.

○**박성훈 위원** 이거를 사서 영향력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대주주가 지금 69.36 가지고 있고요. 지분율이 지금 물납주식이 30.64인데 평가가치를, 거기 경영권이 없는데 경영권프리미엄 20% 합산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높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다만 관련 법에 의해서 이게 두 차례 유찰이 되면 세 차례부터는 10%씩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계속되면 10%씩 감액하다 보면 사실 매각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는 의미지요, 팔릴 때까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계속 유찰이 되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국장님, 맞아요, 그렇게 계속? 1년에 몇 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획재정부국고국장 강윤진 저희는 기본적으로, 넥슨이 지금 수익은 내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정일영 내고 있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강윤진 예,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서 이익유보가 되면 이거를 인수해 가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물납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시장에서 소화하기에도, 그것도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넥슨 대주주 측에서 이거를 인수해 가는 방향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창업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 가족이 받은 게 대주주고 비상장이고 거기에 대한 상속세 형식으로 이거를 낸 거예요, 주식을 물납으로?

○기획재정부국고국장 강윤진 예, 물납으로 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이 매각이 시간이 걸리겠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거를 더 올린다고 해서 답이 될까 싶습니다. 현재는 정부안대로 그냥 내버려두시는 게……

○이인선 위원 그냥 정부안대로 갑시다.

○박성훈 위원 정부안대로 정리합시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정부안대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페이지는 넥슨 물납주식에 대해 예산에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하면 이 4페이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동 사업은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도에 내역사업으로 TARB 및 NDCC 예산 연계 지원 출연금 4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겁니다.

정부는 R&D 편성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 TARB 및 NDCC 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5페이지 하단 보시면 첫째, R&D 성과 제고를 위해서 TARB 및 NDCC 제도를 도입함에도 이에 대한 기재부 차원에서 다시 TARB랑 NDCC를 재평가 실시하는 것이 R&D 사업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가능성과 R&D 성과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요.

6페이지, 둘째 지적사항은 TARB랑 NDCC 평가 결과는 26년 12월에나 도출돼서 재평가는 27년에나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26년도에 TARB랑 NDCC 예산 신규 출연

금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4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평가된 결과가 다시 예산으로 환류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시간상으로 볼 때 반영되기가 마땅치 않으니 이번에 감액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실제로 그다음 해에는 저희가 다시 또 예산이 필요할 때 들고 올 수는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동의? 감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원래 예산은 감액…… 시간상으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나중에, 내년에 다시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감액했으니 이번에는 아예 안 됩니다’ 하기에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항인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얼마를 감액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박성훈 위원 어차피 재평가가 27년부터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이인선 위원 이 R&D는 기재부가 과기부에서 오는 걸 자꾸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 잘해서, 이 센터하고 잘 하셔야 됩니다, 이중적인 잣대로 자꾸 되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명심하시고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예산편성·심의지원 사업은 각 부처가 제출한 R&D 예산요구서에 대해 유사·중복 분석 등을 통해 예산실의 예산안 편성·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을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분의 연구활동비 및 인건비 등 총 3억 2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지적사항은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R&D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5월 말이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이 9월 초라는 점을 감안해서 기재부에서 R&D 예산요구서에 대한 분석을 하는 실질적 사업 수행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인 3개월로 보이고요.

8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실제 수행 기간이 3개월로 보이는데 기재부는 5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으므로 2개월분인 1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업인데요.

동 사업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재부는 내년에 기관장 평가 신설을 위해서 별도의 기관장 평가단 구성을 사유로 일반용역비 1억 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기재부는 경영평가편람 수정을 통해서 기관장 평가 배점을 5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경영평가의 일환으로 기관장 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존 경영평가단을 통해 기관장 평가를 실시할 것인지 별도의 기관장 평가단을 새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기존의 경영실적평가단을 통해 기관장 평가를 흡수할 경우에 별도로 계상된 기관장 평가단 구성·운영 용역비 1억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총인건비제는 방만경영 방지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노사 간 교섭 시 임금 결정의 기준 및 제약으로 작동 중으로 부적절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부대의견을 최기상 위원님이 제시하셨습니다.

부대의견안을 말씀드리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총인건비제의 고용형태별 인상률 차등적용 확대 등을 포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재검토하며 ILO 권고에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 모·자회사 노동조합 간 소통 창구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뒷부분의 부대의견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구를 저희가 수용할 생각이구요. 다만 공공기관 임금격차 실태조사는 현재 노동부에서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부는’ 그다음에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라는 문구를 넣어 주시면 저희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어떻게요? 기재부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10페이지 부대의견 최기상 위원님 안에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실제로 주체가 저희가 되기가 어려워서 그것만 추가해 주시면 저희는 이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기재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함께’ 이렇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이 항목이 심의 항목하고 무슨 연관성이 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세부항목이 같은 세부항목이라 가지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니까 9페이지랑 10페이지는 다른 얘기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다른 얘긴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세부항목이 같은 세부항목에 있는 거라서 같이 설명을 드린 것뿐입니다, 편의상.

○박성훈 위원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라고 하는 이 세부사업 코드에 세세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이 세부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는……

○소위원장 정일영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리고 앞부분 9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번에 경영혁신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공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관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므로 평가단을 새로 별도의 기관장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관장 평가단 운영을 위해서 사실 2억 원 이상의 소요가 발생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력의 효율화나 경비 절감 등을 통해서 자체 흡수하고 난 1억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이인선 위원 여기는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용역비가 1억 쓴다고 돼 있네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별도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평가단의 평가위원 들한테 사례비나 이런 부분을 다 주고 평가에 관해서 실비 등을 하는 건데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 국장이……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저희 이 예산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위해서 기재부하고 이걸 총괄 하는 평가단이 한 100명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 조세연이 중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 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29억 9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전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각종 기타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지금 29억 9000만 원인 것을 30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기재위에서 저희 당이 경영실적평가를 법을 바꾸지 않고 지침으로써 편람 수정을 통해 가지고 평가 배점을 5점에서 100점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두 번째로, 굳이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연에 이미 이 사업에 대한 내역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기관장을 평가하기 위한 이런 별도의 평가단을 만든다? 그 타당성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기존에 있는 기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서도 현재 조세연이 수행하고 있는 그 사업 안에서 이 부분도 같이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답변……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공공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장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면 평가단을 지금 한 10~15명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총 80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요. 또 지금 감사 평가도

기관평가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 평가도 한 10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 용역비 한 2억 정도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업무 로드(load)는 감사 평가보다도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실제 소요는 한 2억 이상으로 봤는데 이번에 지출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1억으로 줄인 내용이 있고요.

또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하고 내용이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계약 이행 성과를 평가한다든지 리더십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정성적인 평가도 많이 포함이 되고 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기관장 평가단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이게 평가 및 관리에 벌써 69억이 있는데 이 안에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관장 평가를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기관평가 자체가 A, B, C가 기관장에 대한 경영방침, 결과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저도 기관장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서도 해 보셨고.

○박성훈 위원 기본적으로 기관평가를 하면 당연히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그 자료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항목만 따로 떼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평가를 한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까 공공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관장 평가는 좀 별도의 트랙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인선 위원 별도의 트랙 하는 게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 안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여기 예산을 넣어 가지고 별도로 하겠다 하면 또 공격받는다구요.

○박성훈 위원 저는 정부 입장에서 정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 보면 경영평가편람도 편법으로 이렇게 기관장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바꾼 것도 문제가 되고요. 다만 이것을 만일에 강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또 별도의 사업명을 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한다,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차관님, 전에 전체회의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정부 측에서 이것을…… 2차관 소관인가요, 이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명쾌하게 야당 위원님들 오해가 없도록 소명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우물우물하니까 자꾸 이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편람을 통해서 그동안 공공기관들 경영평가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그걸 한 11월, 12월 이면 정해 가지고 공공기관들한테 통보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공기관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할 그 틀을 주는 거지, 말하자면. 기관장 평가가 당초에 내부에 항목이 있던 것을 이번에는 뎀 거다. 원래 있던 건데 떼서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관장들이 취임할 때 경영계약인가 뭔가를 맺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더 보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각 기관별로 평가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평가단이 올해도 보니까 2월인가 꾸며졌네요. 그렇지요? 꾸며져서 한 4월인가부터 평가단이 평가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일반용역비 1억을 증액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세연에 29억 9000만 원 하던 것을 30억 9000만 원으로 기관장 평가라는 것을 따

로 하기 위해서 1억을 용역비를 늘린다 이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보면. 그러니까 사실 기관장 평가를 따로 한다 그러면 평가단원 교수인지 그분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용역비가 다소 늘어날 수도 있지만 용역비가 29억 9000만 원이면 그 안에 기관장 평가가 기 있었으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도 가능한 걸로 합리적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래서…… 1억이라는 게 큰돈도 아닌데 설명을 명쾌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임의성·주관성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이걸 별도 트랙으로 만들어 가지고 용역비니 운영비니 증액을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마 좋은 취지로 한 것 같긴 해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관장 평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건 별도로 두고서라도. 기재부 관련 부처에서 알아서 그냥 해 버리면 되게 주관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별도 항목으로 만든 것 같긴 해요.

그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별도 항목을 넣지 말고 그냥 원안……

지금 1억 삭감 의견을 내신 거지요? 지금 수정안이 그거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예.

○**김태년 위원** 원안 유지하고 트랙 만들지 말고 그거 가지고 하면 되겠네.

삭감하지 말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삭감하지 말고?

○**김태년 위원** 하지 말고……

○**이인선 위원** 위원장님 말대로 꼭 필요하다면…… 어쨌든 이게……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원안 유지하고……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공공기관 평가·관리하는 데 69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1억을 뺄 가지고 기관장 평가 용역비 1억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네요?

그것 참 요령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담당 국장 의견 한번 들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이게 용역비가 평가단 용역비고요. 경영평가 관련 용역비를 총액으로 해서 매년 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번에 기관장 평가가 도입되니까 업무 소요가 좀 늘어나서 그 업무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용역비 증액입니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김태년 위원** 원래 용역비는 있었던 거고?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예, 있었던 거고 증액이고요.

그리고 원래 소요는 한 2억 정도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흡수할 부분이 있는지를 봤더니 한 1억 정도는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태년 위원** 기존 용역비가 모자라서 좀 증액하겠습니다라고 그냥 태워 났으면 전혀 지적을 안 당했을 사안을……

○**소위원장 정일영**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야당 위원님들 입장에서든 어렵잖아요. 올해가 71억이네. 그러니까 그냥 71억으로 똑같이 올리든지 하지 또 깎았어요, 69억으로. 그러면서 또 1억을 강조해서 톡 빼 가지고……

○김태년 위원 감액까지 해 가지고 지적……

○소위원장 정일영 기관장 평가 해야 되겠으니까……

○이인선 위원 여태까지 없었던 기관장 평가를 따로 하겠다, 이것은 좀 아니지요.

○김태년 위원 아니, 기관장 평가야 늘 하는 거니까……

○이인선 위원 해 왔잖아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왜 이렇게 요령 없이 해 왔을까?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원안을 유지해 주고 뭘 정리를 해 봐, 트랙을 없애든가 그 안에서.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김태년 위원 용역비를 증액하는 걸로 하면 되잖아.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예, 기존 용역비에 붙이는 건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기관장 이런 얘기 자꾸 앞세우지 말고.

○김태년 위원 빼고. 그게 기록으로 있는 한 야당에서 동의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냥 통으로 해, 통으로.

○김태년 위원 지금까지 해 놓은 말씀들도 있는데.

○소위원장 정일영 그럼. 그냥 통으로 해서…… 원안으로 하고, 69억 8200만 원 그냥 하고. 기관장 평가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결위에서도 하지 말고 자료도 그렇게 만들지 말고. 예?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자꾸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

○김태년 위원 내가 보기에선 잘한다고 한 거야, 지금.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제가 정부를 도와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0페이지 부대의견은 아까 자꾸 수정한 대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그리고 예비비, 일단 설명을 해요? 위원님 오시기 전에 비공개 해서 한번 검토는 했어요.

○김태년 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결정하기 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거든. 1차는 봤으니까.

○김태년 위원 제가 논의에 빠진 건 다 위원장님한테 위임한 거라서 위원장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일단 간단하게 설명은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6년도 예비비는 전년 본예산 대비 1.8조 원 증액된 4.2조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0.8조 원, 목적예비비가 3.4조 원으로 목적예비비가 전년 대비 112.5%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지적사항은 첫째, 예비비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과도하게 높

다는 문제가 지적이 됐고요.

12페이지 보시면 둘째는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재해대책비가 26년 예산안에는 25년 본예산 대비 큰 규모로 증액되어 이와 별도로 목적예비비를 크게 증가시킬 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세 번째, 최근 5년 집행률 및 집행액에 비해서 26년 예비비는 과다 편성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1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정부가 청와대 이전 명목 259억 원 및 경찰경호부대 공사비 명목 45억으로 지출 결정한 예비비에 대한 계약 형태, 시행업체 등 지출세부내역을 기재위에 제출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금 담당 국장이 안 왔는데 일단 앞부분은 저희가 설명은 드렸고요, 원안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은 1차 논의들을 하셨고 이걸 이 정도로 넘어가시고 내일이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부대의견에 대한 입장은……

○김태년 위원 부대의견에 대한 입장.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부대의견 아까 제가 논의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논의하고자고, 일단 담당 국장이 왔는데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지금 저희가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넘겨서……

○소위원장 정일영 예결위로?

○박성훈 위원 예, 거기에서 정리하는 걸로.

○김태년 위원 예결위에서?

○박성훈 위원 아니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보류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언제? 내일?

○박성훈 위원 예, 내일 다시 정리해서 모아 가지고……

○소위원장 정일영 내일 모아서 재논의 사항으로.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하고 두 분의 대표 격이 누구……

○이인선 위원 박성훈 위원이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의 대표……

○김태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이서 하세요.

○박성훈 위원 그래도 위원장님이신데.

○김태년 위원 두 분이서 하세요.

○소위원장 정일영 오시기 전에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하시라고.

○소위원장 정일영 내일 다시 조금 더 깊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다 모여서 하지 말고, 시간 걸려. 이따 끝나고 두 분이 모여서 하시라고.

○이인선 위원 맡깁시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4페이지, 기획재정정보화 사업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는 온북 100대 추가 도입을 위한 7억 4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온북은 사무실이나 원격지에서 동일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업무용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첫째, 타 부처에 비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만 온북을 과도하게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타 부처는 24·25년도에 거의 없는데 기재부만 이렇게 도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고요.

둘째, 조직개편에 따라 기재부가 분리될 예정임에도 구체적인 직제나 온북 배분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도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고요.

세 번째는 설사 도입하더라도 26년도 도입 단가를 예산상 743만 원으로 산출했는데 실제 도입 단가는 24년에 500만 원, 25년에 534만 원에 불과해서 26년 계상된 단가도 과다 산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6년도 온북 추가 도입 자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추가 도입하더라도 실제 온북 도입 단가에 맞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바로 수용이네요. 전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요, 여기 2억 900.

○김태년 위원 2억 900만 원.

○소위원장 정일영 깜짝 놀랐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2억 900 수용한다는 겁니다. 25년 기준으로 2억 900만 원 감액하는 것에 수용.

○소위원장 정일영 2억 900만 원 감액.

○김태년 위원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심사할 때 대세에 지장 없는 것은 그냥 수용, 수용, 수용하고.

○소위원장 정일영 그다음, 5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5페이지입니다. 미래융복합 경제교육입니다.

동 사업은 공무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태안교육시설을 활용해서 경제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첫째, 직무기본교육은 신규 직원, 승진자 및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인사과의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중복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직무전문교육은 기재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교육하는 재정교육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둘째, 중복 이외에도 교육인원이 과다 계상된 문제가 있으

므로 25년도 교육 실적을 고려해서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기재부 직원 대상인 직무전문교육 목표 인원이 2000명이나 이는 25년 기재부 정원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다소 과다하고 조직개편으로 재정부 정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과다 산출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25년도 교육 실적,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감소 등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일리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업과 중복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봤더니 일부 중복은 있고 대체로는 중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복이 저희가 생각하는 한 2600만 원 정도는 감액할 계획이고요, 감액을 일정 부분은 받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중복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과다한 것 부분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다른 데도 보면 대체로 기관 정원의 한 10배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듣고 있는 거지요. 사실 1.8배는 많지 않은, 그렇게 과다하지 않고 실제로 이것 저희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낮은 것은 올 상반기에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를 교육하면 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러면 현재로서는……

○소위원장 정일영 차관님 말씀은 2600만 원 감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2600만 원을, 중복 부분은 저희가 발라내 봤습니다. 그것은 감액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유상범 위원님 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인선 위원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아.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이렇게 통과?

○박성훈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7페이지입니다.

동 세부사업에서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한 연구비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 홈페이지는 9월 말 기준 구축 중으로 아직 오픈되지 않아서 특별한 기능개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기재부는 계약액의 약 40%에 달하는 5000만 원을 기능개선 예산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개선을 위한 연구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으며 홈페이지를 우선 일이 년 운영한 후에 기능개선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 구체적 산출내역을 도출해서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므로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홈페이지 저희가 알아봤더니 원래 한 번에 다 만들어서

잘 운영하다가 훗날 좀 보완하자 하면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니까 25년에 아주 기초적인 수준으로 오픈을 하고, 연말에 오픈을 하고 내년에는 온라인교육 관리하는 기능까지 탑재해 가지고 고도화하는 걸로 해서 처음부터 2단계 계획을 갖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것을 삭감하시면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의 홈페이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기왕에 만들 거면 잘 만드는 게 좋아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삭감 없이 원안 통과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8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2개 팀 8명의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6년 예산안에 과운영비 및 특근매식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직제에 반영되지 않는 팀에 대한 과운영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과운영비는 각 중앙관서의 직제에 반영된 과·팀 등의 기본경비로서 편성지침상 직제에 반영이 돼야 편성될 수 있는 지침입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25년 집행지침에 사실상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도 과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적사항은 26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는 26년도 편성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26년도 편성지침에서는 직제에 반영된 과운영비만 계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원 8인에 비해서 과다 편성된 특근매식비 2인분인 26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여기 말씀하시는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으나 예산안 집행지침에는 사실상 과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과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있었고 내년에 넣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관에 가 보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태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일부 수용할 수도 있겠으나 저희는 이 부분은 좀…… 특근매식비도 사실 10명이라고 했는데 8명 있어서 좀 그럴 수는 있으나 이것까지 감액해야 될지 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차관으로서 참……

○**김태년 위원** 처우에 관한 거니까 이걸 그냥 인정해 주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9페이지입니다.

기재부는 26년에 간담회 총 98회 개최를 전제로 간담회 업무추진비 총 3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러나 2025년 간담회 개최 횟수는 8월 말 기준 22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실질적인 업무협의 성격을 제외할 경우 15회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예산

안 산출기준인 98회는 과다 편성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간담회 개최 실적 등을 고려해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김태년 위원 간담회를 못 할 사정이 있었잖아요, 상황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늘어날 거 같은데요. 앞부분을 또 양보해 주셨으니까 여기는 일부 감액을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굵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한 30% 감액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30%?

○김태년 위원 많이 감액하는데 할 수 있어요, 이것을 30%씩이나 감액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더 올려도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왜 그렇게 갑자기 감액을 해요. 김태년 위원님이 그냥 넘어가자 그러는데 감액해?

○박성훈 위원 차관님이 최종적으로 감액 규모를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태년 위원 1200만 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한 1000만 원 하시지요, 그러면.

○김태년 위원 1000만 원, 그래요.

○소위원장 정일영 1000만 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김태년 위원 자진납세 한 거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앞부분에 저희 직원 처우 개선에서 말씀 주셔 가지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0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 각 실국 특근매식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매년 불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재부 특근매식비 집행률은 표와 같고요. 집행률이 낮은 것을 감액을 하는데 감액 기준을 세웠는데요. 24년 결산 기준 집행률이 60% 미만인 세부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이라는 건 각 실국에 대해서 26년도 예산안과의 차액 50%를 감액할 경우에 1억 4000만 원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특근매식비가 연차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올해의 경우에 보면 10월 말에 70% 정도 집행이 됐고요. 연말까지 가면 85%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10%를 저희가 감액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줄이면, 저희가 내년에 집행률이 한 90%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라서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특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일 좀 많이 해야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열심히 일하게 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저는 기재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와드리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2023년하고 2024년에 집행률이 떨어져 있는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아마 예산실 쪽에서 좀 낮았던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소위원장 정일영** 일을 안 했어.

자, 기재부 원안대로 그냥. 일도 많이 해야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2페이지입니다. 혁신조달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혁신제품 지정·평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부는 2026년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2026년도 조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산출 시 민간위원 정원 10명이 아닌 당연직 위원(장차관)을 포함한 전체 정원 20명으로 수당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연직 위원은 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원 정원으로 산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다만 내년도 조달정책심의위가 올해 4회로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서 7회로 감안을 하면, 위원들 숫자는 20에서 10명으로 줄이되 조달심의위의 횟수는 올해 계상된 4회에서 7회로 늘리면 그런 거를 감안할 때는 300만 원 정도는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나는 이거 더 올려 가지고 회의 더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회를 지금 7회로 바꿨습니다.

○**김태년 위원** 7회 갖고 모자라. 혁신조달 이거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 회의 매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허락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런데 당연직 위원 수당을 왜 포함했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당연직 위원 수당을 잘못 올린 겁니다.

○**이인선 위원** 잘못 올린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그래서 그거는 감액하고 횟수는 늘리고 해서 그러면 그 차액이 300만 원입니다.

○**김태년 위원** 7회를 한 12회로 해 가지고……

○**소위원장 정일영** 1억 미만 감액은 소소위를 다시 구성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거 300만 원을 저희가……

수용. 수용.

자, 24.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경비 그다음에 국유재산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국가 배상금·반환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도 예산안에 배상금 1억 4200만 원, 반환금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사업의 배상금·반환금은 24년도에도 전액 불용되었고 25년 9월 기준 국유재산 관련 소송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의 경우 1심 평균 처리기간이 311.6일이고 항소심 평균 처리기간이 276.2일이고 상고심은 123.1일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국유재산 관련 소송이 없기 때문에 26년도에 예상한 배상금 및 반환금에 대한 예산집행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전액이네요, 전액 감액?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이 배상금이 물론 일부 실적이 없는 건 인정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간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걸 감안하면 한 20% 정도 감액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저도 차관님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유상범 위원님이 정리한 자료를 보면 현재 국유재산 관련 소송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관련 소송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소송은 제기되더라도 1심 기간이 311일 걸리니까 집행 가능……

○박성훈 위원 어차피 27년으로 넘어간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그다음 해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평균이 그렇다고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소위원장 정일영 좀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요?

○김태년 위원 있어야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일정 부분 감액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20%?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20% 감액.

○김태년 위원 일종의 예비비니까, 성격이.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액수는 계산해서 넣으세요. 20% 감액.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5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 특례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특례에 대한 존치평가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출연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동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 출연금 6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법률상 출연금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거는 국유재산 특례와 관련해서 평가하는 사업이고요. 현재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같이 하자는 취지인데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찾아보면, 물론 설립기관의 기본법에는 그게 없지만 사실은 그 당시, 저희가 볼 때 여기에 언급한 국가재정법 이 밑에 있는 내용은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출연이 있다면 넣자라는 의미이고요. 이거 말고, 사실 이 돈은 조세연구원에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정부가 특정한 일을 주기 위한 출연이지요. 그러면 일을 주는 법에서 담아도 된다. 즉 국유재산특례법에 이 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국유재산특례법 7조에 보면 의뢰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밑에 별도의 기관의 명칭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갖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차관님, 기재부가 아니라 다른 부처가 이런 유사한 구조로 예산을 편성 요청했을 때 기재부의 논리가 흔들리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재부를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명확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강운진** 안 그래도 제가 예산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또 해 봤는데요. 예산실 입장도 조세연구원이라는 게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정부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이 존치평가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경비 지급은 조세연구원의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산실에서도 의견을 줘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그대로 좀 갔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모든 출연연구기관이 다 그렇다고 보면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사실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거는 출연금에 대해서 그 법에서 직접 출연 근거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일례로 조세지출 성과관리 평가도 관련 법에 출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출연연구기관은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하면 모든 사업들을 다 개별 법의 법적 근거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거는 행정 편의적인 생각이고 법률에 그거를 담아야 된다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출연금,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면 출연금이 아니라 다른 비목 전환을 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나 이런 거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법을 그렇게 행정부 자의대로 해석해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선 위원**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안을 냈어요, 이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박성훈 위원** 수석님 말씀처럼 기재부가, 왜냐하면 타 부처가 동일한 문제 제기를 할 때 아마 기재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처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거든요.

○**이인선 위원** 너무 광의의 해석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유사한 요구가 타 부처로부터 들어올 때 방어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네요.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일단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예, 보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6페이지입니다. 일시차입금이자 상환입니다.

동 사업은 국고금 출납 시 발생하는 일시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재부는 이자비용 산출 시 2022~2024년 일시차입 연평균 잔액인 10.2조 원에 예상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은 일시차입금 연평균 3개년 간에 10.2조 원은 세수결손 및 추경 편성 등 비정상적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차입 급증이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세입 진도율이 정상화되는 경우, 세수결손이나 그런 부분이 치유되는 경우에 이자비용은 지금 추정하는 과대 추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인선 위원님께서서는 그런 상황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의 유지를 해서 107억 9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김태년 위원님은 부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부대의견안은 기재부는 일시차입금이자 상환의 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 부족, 추경 등 예외적 요인을 배제하고 과거의 평균 세수 진도율과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치 등을 반영한 차년도 일시차입 수요 예측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일시차입 수요가 재정 여건에 따라서 계속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의 경우에 한 2500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물론 올해보다는 줄어드는 겁니다. 올해보다는 줄어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운용하는데 실제로 올해의 경우에도 보면 별도의 예산 이외에 자체 운영수익으로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용해서 이거를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꾸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규모가 줄더라도 일정 부분 메꿀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렇게 메꾸는 게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려 가지고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이인선 위원** 지난번에 일시차입금 문제가 늘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계상이 안 되면 증액 없이 올해 수준으로 가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요 예측치가 정확히 나오면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라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감액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박성훈 위원** 저희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랑 지금이랑 입장이 바뀌는 부분인데……

○**이인선 위원** 지난번에 일시차입금 얼마나 야단쳤어요. 그래서 감액.

○**박성훈 위원** 저는 기재부 입장이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다만 야당으로서 지금 여당의 입장……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 위원** 우리가?

○**박성훈 위원** 당시에 일시차입 하면 이게 왜 이렇게 일시차입을 많이 하느냐……

○**김태년 위원** 그런데 이인선 위원님은 감액의견을 내면 안 되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지난 정부 때는 하면 안 된다고 막 주장하셨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대로 가자고 해야지.

○이인선 위원 입장이 바뀐 거 아닙니까, 입장이.

○김태년 위원 국가 운영을 여당 될 때하고 야당 될 때하고 막 바뀌면 안 돼. 똑같아야 돼.

○이인선 위원 그게 위원장부터 해서 한두 건이었습니까.

○김태년 위원 감액 주장을 하면 우리가 해야지.

○박성훈 위원 당연히 일시차입이 필요하고요. 다만 여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인선 위원 예상 수치를 정확히 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러면 여기 김태년 위원님이 주신 부대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금액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김태년 위원 그런데 나 지금 기분 나빴거든요. 뭐냐 하면 내가 이거 보니까 이인선 위원님이 내신 안은 다 검토를 해 왔어. 그런데 김태년 위원님이 낸 부대의견안은 아예 검토를 안 해 왔어. 완전히 무시해 버리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게 아니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태년 위원 완전히 무시해 버리네, 그냥. 그래 갖고 여기서 검토하네.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이슈처럼 몇 프로 올려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정일영 다시 그러면 보류?

○박성훈 위원 예, 당의 입장이 이렇게 또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위원장 정일영 예, 그러시지요.

10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7페이지, 동 사업은 기재부 본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복리후생비는 2025년도와 동일하게 13억 1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재부는 매년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으로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다른 데로 전용하고 실제 집행률이 표와 같이 80%, 7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보시면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기본경비의 경우 최근 수년간의 이전용, 불용 등 집행 실적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세부지침 취지에 맞게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을 실수요에 맞게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복리후생비는 직원들 건강검진, 맞춤형 복지 등 직원의 건강과 사기 진작에 관련해서 필수 소요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조직개편이 되고 내년에 변동성이 클 텐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주셔서 현행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냥 통과됐네. 간곡히 부탁하신다고 하니까 마음들이 약해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8페이지입니다. 11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에 대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일반회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발행자금을 통해 예수받은 자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기재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국채 이자가 24년 28.3조 원에서 29년 42.1조 원으로 48.8% 확대되고 채무비율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부동산세, 증권거래세 초과 세입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자국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환 이자도 5000억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금리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낼 때보다 지금 현재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동향도 있고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을 타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겪고 있어서 저희는 오히려 좀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현행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박성훈 위원 기재부가 대표적으로 삭감 재원을 넣어 두는 항목이기는 한데요. 이 금리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가 설명한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금 최근에 국채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박성훈 위원 지금 국고채시장이 가장 불안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담아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원안, 정부안대로.

1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9페이지입니다. 12번입니다.

동 사업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1000억 원 특별투자 한도를 신설하기 위한 재원 100억 원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에 100억 원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2024년에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을 출자해서 1.8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인 공급망안정화펀드를 조성하였는데 이 중 3000억 원만 주목적인 공급망에 사용하도록 합의되어 공급망 분야에 대한 실제 투자는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 사업으로 기금이 광산개발 등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대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일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자금조달에 큰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자한 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이 낮아 실제 공급망 분야

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해서 100억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말에, 동 사업은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수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민관합동 펀드는 이 돈을 수은하고 민간하고 같이 돈을 태워서 민간 운용사에 맡겨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도 공급망이 아니고 조금 더 넓게, 해외투자며 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근본적으로 민간 운용사가 운영하다 보니 훨씬 더 수익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본연의 목적도 하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더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장기로 고위험 투자라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돈을 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은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에 가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본연의 목적대로 운용하는 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일리가 있네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것만 물어봅시다.

공급망안정화펀드하고 100억하고 관련이…… 조금 나누어지는 것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다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르잖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다릅니다. 그런데 비슷하니까 수은에서 계속하자는 게 제기된 의견이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앞에 만든 펀드는 민간 주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르지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아예 리스크 태깅이 다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이인선 위원 민간이라는 게 대기업이 차지하는 저게 있나요? 민간이라는 게……

○김태년 위원 민간펀드가?

○이인선 위원 예, 민간펀드가 대기업 다 오픈해서 하는 건가요?

○김태년 위원 펀드야 이것저것 다 들어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펀드는 민간 운용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망에서 직접……

○김태년 위원 그러면 민간 운용사에서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아서 여기 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은 옛날, 예전 펀드고요.

○이인선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벤처캐피털 이런 사람들이 하고 싶을 때도 못 하면 약간의 포션을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을 지금 미리 쿼터를 드리기는 좀…… 실제 목적에 따라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요새 공급망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중요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트럼프 관세 그게 한고비 넘는다고 그러면 다음에 공급망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핵심 광물인데 투자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핵심 광물들. 회소금속 및……

○박성훈 위원 이게 문제는 이걸 것 같아요. 결국은 정부가 수은에 100억 출자를 하고 수은이 여기서 다시 기금에다가 1000억을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하는 목적 자체가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하라고 정부가 출자를 했는데, 출연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나중에 실제로 쓰이는 것은 이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활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자한 펀드의 주목적에 맞게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목적 외로 지금 출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는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저희 지적인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그 목적대로 투자가……

○김태년 위원 저기 담당 국장이 한번……

○소위원장 정일영 담당 국장이요? 무슨 국장이요?

○기획재정부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지금 박성훈 위원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쾌하게 답을 하세요. 다른 데도 써요?

○기획재정부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 아닙니다.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공급망안정화펀드는 수은과 기금이 같이 출자를 해 가지고 주목적 외에 다른 목적에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출자하는 것은, 이 100억 원은 출자해서 100억 원이 공급망기금에 출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급망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펀드와 아까 지금 혼동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원안대로 그냥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뒤 페이지 부대의견만 정리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페이지까지만, 같이 연결된 건데 부대의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대의견 2건인데요.

첫 번째는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된 자금은 국가재정으로 회수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기금을 통해 투자하는 것보다 수출입은행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재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 분야 직접 투자를 늘리는 대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계획을 축소하고 기금 출연을 위한 출자금 감액을 검토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밑에 부대의견은 기재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이 감내 가능한 위험 범위와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기금 청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재정으로 귀속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위부분의 부대의견은 앞에서 이미 논의하셔서 원안 유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대의견은 논의할 실익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조금 설명드릴 게 당연히 저희는 잔여재산을 국가재정에 귀속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행법에 그것을 담을 수 없던 이유는 이 법에 기금의 청산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습시다. 예를 들면 20년간 운영한다라고 하면 단서조항을, 그 조항을 넣을 수 있는데 현재 그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귀속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넣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훗날 나중에 청산을 논의할 때 그때 그 규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안기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청산할 때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견 중에…… 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금 청산 시 잔여재산이 귀속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인데 이 ‘기금 청산 시’가 향후를 의미하는 이야기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기금을 청산하는 경우’ 이렇게 해 주시면 클리어해질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향후 기금을 청산하는 경우.

○김태년 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런데 지금 바로 단서를 넣으라는 것처럼 오해를 할까 봐……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그러면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숙개는 본회의가 끝날 때가……

○김태년 위원 본회의 산회 직후.

○소위원장 정일영 산회 직후? 하여튼 4시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산회 직후.

○김태년 위원 예, 산회 직후. 바로 올라와서 하면 되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소위 자료 31페이지입니다.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미 투자패키지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나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7000억 원 전액 감액하자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안으로 기재부는 수출입은행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신설되는

기금이 대미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 수출입은행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 보증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된 7000억 원의 출자금을 전액 감액한다는 부대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승래 의원안은 타결된 협상 세부 내용을 고려할 때 전액 삭감이 필요하지만 해당 재원은 한미 통상협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므로 협상 결과 이행을 위해 감액된 예산을 새로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기관에 출자로 편성하기 위해서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에서 7000억 원을 감액하고 대미투자 지원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70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증감액 연계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처음에 예산안 냈을 때 수은·무보·산은에 출자 지원을 해서 그걸로 하였으나 협상 결과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조승래 의원님처럼 일단 수은에서는 감액을 하고 새로운 대미투자 지원의 항목으로 추가로 해서 넣어 주시면 예결위에서 또 추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박성훈 위원 수은에서는 삭제하는 걸로?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수은에서는……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증감 연계라고 했으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증감 연계입니다, 증감 연계.

○박홍근 위원 그렇게 이것도 조건을 달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박홍근 위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항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대미투자 지원이라는 항목에다가 옮겨 놓고 이걸로 기금에 출자하겠다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대미투자 지원을 기재부에서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대로 의결을 하면 됩니다. 감액하고 증액하고 동시에 하면 됩니다.

○김태년 위원 14번처럼 하면 되잖아, 신규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코드 그것 해 가지고 감액하고 증액 해 가지고 증감액 연계로 넘기면 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박성훈 위원 이번에는 저희가 단서를 달 필요가 있는 게 국회 비준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특별법 제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국회 비준을 전제로 해서 이 재원을 담는 것으로 그렇게……

○박홍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비준이라고 하는 법률적 성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MOU 수준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비준 대상은 아니라는 게 저희들도 검토해 본 결과인데

일단 지금은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디에 담을 거냐의 문제, 이것도 법률적 성격이 있는 거지요, 예산의 항목은.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대미투자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을 코드를 만들고 그것은 법률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은, 똑같이 본회의에서 예산안 전체를 통과할 때 각각 항목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대미투자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는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MOU 전체에 대해서 그것이 비준이나,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마 지도부가 앞으로 계속 논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그건 다른 트랙에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적 구속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담기보다는 앞에 단서를 좀 붙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필요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전제로 해서 삭감 또는 증감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문구를 기재부 차원에서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면 비준 안 하면 이 예산 안 태우려고? 그건 비준 여부와 관계……

○**박성훈 위원** 저희가 그러면 지금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뭘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비준 여부는 별도의 트랙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고 또는 그와 관계없이 이 예산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박성훈 위원**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7000억이나 되는 돈을 담는다? 저는 재정 당국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훈 위원** 앞에서 말씀을 논리적 차원에서 구속력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박성훈 위원** 구속력이 없다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2000억 불을 현금으로 지급을 안 해도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7000억이라는 돈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 일관성을, 정합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구속력이 없어서 저희가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건 이게 결국은 국익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 예산과 법률을 통해서 저희가 국회에 오고 그 전에 또 미리 저희가 그때 국감 직후에 바로 설명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훈 위원** 일단 이것은 보류로 해서 넘겨 놓으시지요.

○**김태년 위원** 애써 관세협상 내용을 막 모른 척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기재위에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은 일단 비준에 관계없이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현시점에서 필요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리고 구체적인 MOU 내용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그간의 내용으로 봐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것이 예결위로 가서 또 12월 초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쯤 되면 제 생각에 MOU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고 그때 또 논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기재위 현재 시간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박성훈 위원님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재논의하는 걸로 해서 일단 넘겨 보지요. 보류.

○박홍근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래서 7000억을 당초의 여기다가 태우면 BIS비율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원래는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규모의, 그중에서도 전액이 아니고 재정의 여건이 있으면 일부를 담은 거고요. 저희가 기금으로 하게 되면 BIS비율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금액은 다 필요합니다.

○박홍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봐도 이 7000억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부족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부족하지.

○박홍근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향후에 MOU가 공식적으로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게 적정한 게 얼마를 해야 되냐 문제로 논의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예산심사의 시점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어때요? 아니면 최소한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한다든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볼 때는 산은·수은·무보에 다 보냈던, 다 합치면 1.9조이거든요. 1.9조 이게 다 옮겨도 현재 저희가 약속한 내용하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올해 1.9조로 왔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차관님, 이 돈이 2000억 불하고 별도의 1500억 불 어디에 사용된다고 봐야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1500억 불…… 1500억 불을 저희가 금융지원하려면 그 재원이 필요합니다.

○박성훈 위원 일단 보류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서 이것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뭐라 그랬지요? 별도 코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것을 다음 재논의할 때 좀 더 클리어하게 한번 정리해 주고 코드를 어떻게 넣을지 협의해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코드는 기재부랑 협의해서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2페이지입니다.

금융협력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주요국과의 금융협력을 위해 국제부담금을 납부하고 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에 국부펀드 투자협력 관련 행사 개최는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점과 간담회는 일반용역비가 아닌 사업추진비

등으로 편성해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행사 개최 일반용역비 6000만 원 중 일부를 감액하자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이거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감액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1000만 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현재 6000만 원인데요.

○소위원장 정일영 의견. 1000만 원 감액으로?

○김태년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그렇게 정리합시다.

○김태년 위원 우리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동의한 걸로 생각하세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정일영 예, 빨리빨리.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3페이지, 기후행동강화 지원(ODA)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대응을 위해 국제기구 기금 등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내역사업인 GGGI 신탁기금과 UNFCCC 협력사업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추진을 위한 한-GGGI 신탁기금 협정 개정과 한-UNFCCC 양해각서 서명에 따라 전년 대비 각각 90억과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GVCN 구축을 위한 기재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며 예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내역사업인 GGGI 신탁기금 90억 원과 UNFCCC 협력사업 20억 7000만 원 등 총 110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자발적 탄소 거래를 국제적으로 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 부분은 COP29에서 2024년에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번에 그래서 싱가포르, 영국과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탄소시장 주도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선제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UNFCCC랑 GGGI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앞으로 국제표준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예타와 관련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ODA 사업은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MOU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체결하기 전에 국회에 먼저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국제기구분담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법에 따르면 내부계획을 만든 다음에 국회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GVCN은 우리 정부가 세계 정부에 최초로 제안한 사업이지요? 다른 유사 사례가 없지요?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문지성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두 번째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구체적 연구가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할 연구 내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문지성 개발금융국장입니다.

현재 UNFCCC 그리고 GGGI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방법론이 되든 카테고리화(categorize)를 명확하게 했는데 실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큰 방향에서의 카테고리는 정해졌는데 세부 디테일은 사실 저희가 개발할 수 없고 기후 분야 전문가인 UNFCCC를 끌어들여서 그분들로 하여금 기준을 세우게 하겠다. 다만 그 기준에 한국 정부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후테크들이 반영이 돼서 이런 내용들이 국제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선도해서 UNFCCC 그다음에 GGGI를 끌고 가기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사업을 위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필요할 것 같네요, 새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정부 원안대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MOU 개정을 통해 국제기구에 출연을 약속하면 국가재정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와의 신뢰관계를 고려 시 MOU 개정 이후에는 국회에서 출연 예산액을 조정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서 부대의견안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신규 출연을 하는 등 향후 예산 반영이 필요한 MOU를 국제기구와 체결하기 전에 이를 국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교부의 국제기구 분담금은 정부가 분담금 납부계획을 확정 한 이후에 국회에 납부계획을 제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는 현재의 돈도 똑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저희는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왜 필요하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법에 따르면 분담금 납부계획을 확정하고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에 납부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고 국회는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MOU 체결할 때 국회에 미리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는 현재 국제기구분담법에 따르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해되셨어요?

○김태년 위원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라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MOU 할 때마다 국회에 보고하기

에 너무 이게……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런데 돈 들어가는 거 딱 체결해 놓고 ‘이거 우리 체결했으니까 예산 태워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실제로 MOU가 굉장히 많이 국제기구와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마다 국회에 오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법에도 그런 절차 없이 확정이 되면 국회에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용하고 싶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니면 예산 반영되는 규모별로 해서 얼마 이상의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만드시면 안 될까요? 저는 김태년 위원님 부대의견 중에서 향후 예산 반영을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하면 충분히 기재부 입장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거는 국제기구 관계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소위원장 정일영** 차관님 얘기대로 하면 MOU 체결하고 안 지켜도 되는 경우 많다 그런 뜻이네요, 결국은?

○**김태년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그러니까 MOU 체결……

○**김태년 위원** 건건이 갖고 올라오기는 번거롭다 이건데……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건건이 그 뜻이…… 그런데 MOU 체결을 하고 바로 예산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항상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뜻 같은데, 아까 말뜻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만약에 출연이 필요하다더라도 그때마다 사전에 국회에 와서 보고하기에 행정부의 재량이 너무 기속되니 나중에 국회에서 예산을 내면 그때 평가를 하실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김태년 위원** 아니지요. 한번 MOU 맺어 왔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러면 MOU 취소해’ 이렇게 하면 들을 거예요? 아니잖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정부에도 재량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년 위원** 아니요, 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차관님 설명이 잠깐 엉켰다니까, 지금.

○**김태년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되면 김태년 위원님 말하고 충돌이 돼.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문지성** 제가 조금만 보충……

○**박성훈 위원** 결국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는 내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그것을 국회에 보고를 하는 게……

○**이인선 위원** 금액의 상한선이라도 잘라 가지고……

○**소위원장 정일영**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차관님이 약간……

○**김태년 위원** 무슨 승인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보고하라는 건데……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문지성**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외교부에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기구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기구랑 확정해서 가지고 와야 우리가 심의한다’ 그런 취지에서 확정해서 갖고 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기구랑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 얼마 벌지는 모르겠지만 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법적인 취지에서 보면 오히려 국회의 입장에서는 기구랑 협의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것을 심의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MOU라서 법적인 의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순서를 앞뒤를 바꾼다면 사실은 저희가 법 취지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일하기도 어렵고 그런 취지로 차관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문 국장님, 이 논리라면 앞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미국에 출자하는 그 펀드 같은 경우도 MOU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국회에 사전에 보고조차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도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신규 출연이고 향후 예산 반영이 필요하고 MOU를 국제기구 대신에 미국정부로 바꿔 버리면 사전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성립을 하는데……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문지성 저희는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 조항은 국제기구 분담금에 관한 법의 해당 사항입니다. 그 법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박홍근 위원 그것은 다 이해가 된 것 같아요. 현재 법률에 따라서 정부는 그 절차를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법률을 고쳐 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입장을, 논리를 저는 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것처럼 MOU라고 하는 비구속적 성격일지라도 그 규모가 크거나 또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는 나중에 이게 확정해서 국회에 와서 예산으로 심의하는 방식 말고 사전 보고에 충실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양자의 입장에서 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게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태년 위원님이 낸 부대의견을 저는 모든 것을 다 의무적으로 하기에는 각 부처와 기관들이 MOU가 엄청 많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다 합니까? 내가 봐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다만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소위건 상임위건 사전 뭔가 보고의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 단계를 진행해서 공적인 예산편성의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갈 필요성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국장님, 내가 조정안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MOU 체결을 하더라도 MOU의 금액이 딱 안 나오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불 한도로 한 다든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김태년 위원님 말씀도 그 MOU 체결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말하자면 침해하는, 저촉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연간 MOU 체결, 이게 갑자기 뚝딱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꾸준히 국제기구하고 협의해서 MOU 체결이 나올 테니까 연간 MOU 체결계획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국회에 보고하는 게 어때요, 그 정도로 정리하는 게?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문지성 주신 의견을 대안으로 검토해서 여기 부대의견에 최대한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 정도로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5페이지 17번, 녹색기후기획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후 관련 국제 초청행사 개최, GCF 이사회,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등 국제회의 참석과 대응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 중 일반수용비는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81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실적이 저조하고 일반수용비 집행이 부진하므로 실적 등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증액된 일반수용비의 증액분 3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3000만 원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6페이지입니다. 경제협력기획(ODA)입니다.

동 사업은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 상생의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2025년도 예산에 없었던 긴급협력사업을 신설하면서 해당 사업 명목으로 75억 1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해당 예산은 성격이 모호하고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어 개별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75억 1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사업은 본래 아예 없던 것을 새로 만든 사업이 아니고 올해의 경우에는 내내역사업으로 아주 밑에 있던 건데 이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끌어올려서 내역사업으로 올리다 보니 마치 새로운 사업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긴급협력사업이라서 마치 예비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업의 리스트업이 죽 되어 있고요.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에 따라 커트라인에 맞춰서 다 나가게끔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원래 있었던 거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이 사업 자체가……

○박홍근 위원 가령 어떤 사업이에요? 가령 긴급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업으로 쓰이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 줘야지 그게 긴급협력사업으로서 타당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민경설 대표적으로 라오스와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항공운영 체계 개선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긴급협력사업이라는 게 원래는……

○소위원장 정일영 마이크 켜어요? 뵈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발언할 때는 마이크 켜……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민경설 저는 대외경제국장 민경설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KSP는 N-2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제안을 받아서 N-1년에 선택팅(selecting)하는 작업을 거쳐서 N년에 시행을 하는 방식인데 이 긴급협력사업은 2년간의 텀을 두기보다는 그전 해에 긴급 소요가 있는 국가들의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의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늘리자라는

게 저희들 대외경제 정책 방향에서 기존에 발표가 됐고 보고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늘리자라는 차원으로써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이 내용들이 세부내역사업으로 안에 들어가 있던 건데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내역사업으로 구체화시켜서 이제 보고드리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

○박흥근 위원 어디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국제기구 협력사업이에요, 아니면 정부 간 협력사업이에요? 그전에 세부내역사업은.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민경설 그러니까 내역을 조금 다르게 했었는데요. 과거에는 ‘양자 정책자문’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속사업, 그 내역 중에서 협력국 긴급요청사업 이렇게 있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것, 2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거, 올해 하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두 사업이 걸쳐 있어 가지고 올해 사업에는 작년부터 시작된 것 13억 5000이 들어가 있고 올해부터 시작된 게 22억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 거고요. 그게 내년 예산안에 는……

○박성훈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기존에도 있었던 사업이라고 하시면 계속사업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도 사업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규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금액을 좀 갈라 주실 수 있나요? 그걸 보면……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민경설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게 22억, 그러니까 두 해에 걸쳐서……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된 게 13억 5000, 올해부터 시작되는 게 22억 5000, 22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내년에는 22억과 함께 추가적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민경설 그러면 한 53억 정도 됩니다.

○박성훈 위원 53억요?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민경설 예.

○소위원장 정일영 또 다른 위원님들.

○박흥근 위원 하여튼 필요해 보이는데 그게 적정한지는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내역사업에 있던 것을 끌어올리자, 그리고 이게 긴급해야 되고도 미리 계획 세울 수 없는, 1~2년 차에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하고 특수성 이런 것을 고려하는데 그게 이제……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민경설 저희 받아 놓은 리스트도 있고요 필요하면 그것도 드릴 수……

○소위원장 정일영 그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주십시오, 재논의도 하고. 자료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민경설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7페이지입니다. 19번, 협동조합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금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 판로 지원,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2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은 협동조합 운영률이 50%에 불과하여 예산 증액의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서 올해 전년 대비 증액분 1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협동조합은 고용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충 등 여러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만큼 그 역할의 중요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늘어난, 크게 증액된 부분은 생애주기별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장단계별로, 초기의 경우 그리고 좀 더 늘어나서 고도화하는 경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따라가면서 지원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어려운 협동조합을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에 시장성이 있지만 매출이 부진한 걸 초기부터 지원해서 점점 키워 나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이인선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얼른 보면 사업을 굉장히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유령 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하면서, 아까 고도화하는 것은 뭐고 이렇게 조금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만 봐서는 제가 구분을 잘 못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무리하게 예산 증액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코멘트를 남겨 놔습니다.

○박성훈 위원 저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성과가 증명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상 지역에서 세금 빼먹는 그런 용도로도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성과나 근거 없이 이렇게 계속 증액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운영률 50%라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협동조합 운영률이 50%라는 게 낮아 보이지만 신생기업의 5년간 생존율은 36%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비교하면, 일반 기업하고 보면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선 위원 일반 기업하고는 비교를 못 하지요, 이것은.

○소위원장 정일영 운영률이라는 게 뭔데요, 운영률?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그러니까 생존하고 있는 율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생존율?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예. 한말씀……

○소위원장 정일영 계속 문 닫고 살아남고 하는 그거예요? 몇 년 동안?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현재 기준으로……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서 바로 문 닫는 경우도 있고 한 10년 뒤에 문 닫는 경우도 있는데 통계를 잡을 때 몇 년 동안 살아남는……

○박흥근 위원 누적인가 보지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예, 설립 이후 누적.

○소위원장 정일영 전체 누적?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예.

○소위원장 정일영 언제부터?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창립하고 나서……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13년부터 지원해 왔고……

○소위원장 정일영 2013년?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예.

○박홍근 위원 그러면 적은 게 아니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2013년부터…… 적은 게 아니네.

○박성훈 위원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자생력을 갖추느냐의 여부인데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의 사업들, 운영률이 50%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 돈을 대 주는 것 이것은 저희가 좀비기업에다가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나 자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국민 세금을 이런 데다가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 이건 평균적인 운영률인 거고요. 이 중에는 보면…… 키워서 계속 성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런 차원에서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벤처기업 지원이랑 같은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냥 뿌려 주는 돈이 아니고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을 해서 13억 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단계별로 키워 나가겠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도 사실 많이 살지 않지만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랑 달리 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 외에도 판로 지원, 전문 상시 자문 이런 걸 포함해서 15억이 늘어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이 있겠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박홍근 위원 이번에 지금 14억 정도를 신규로 늘리는 거고, 그 14억이 대강 어떤 걸로 구성된 거예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미래전략국장 천재호라고 합니다.

그 13억이 아까 전에 저희 차관이 말씀드린 생애주기별로 하는 걸 신규로 협동조합에 요청하는 종합 컨설팅 사업으로 넣은 거고요.

이게 그냥 100%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주는 돈이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고도화 사업은 30%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부가 돈을 주는 것을 다 자기들이 쓰는 돈이 아니고 컨설팅 비용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그냥 요청해서 세금 가져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른 보통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도 다 컨설팅은 지원해 주거든요, 정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태년 위원 컨설팅을 잘해 줘야지 자생력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좀 지원할 필요성은 있지요, 협동조합에.

○박홍근 위원 알다시피 영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이런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아마 전체 GDP의 5% 이상 차지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편인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우리는 지원이 부족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관련 법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고 이런 예산 지원도 최소한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선 위원 저는 필요한데요, 어쨌든 도약 지원을 30개 하겠다, 고도화 지원 30개 한다, 협업 패키지 10개 한다…… 어떤 기본의 보드를 보고 이걸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 보면 좋은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잘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요. 협동조합 잘하는 데 굉장히 잘하는데 어쨌든 유명이 있어서 또 말씀이 많은 것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표, 아우트라인을 보면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지요.

○김태년 위원 협동조합은 보는 눈이 많고 감사받고 이런 걸 많이 받아서 조금 양호하게 가요. 실제로 현장에서 양호하게 간다고.

○이인선 위원 그런데 또 말도 많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은요 그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좀 더 자료를 국장님이 차관님이랑 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사례하고 어떻게 성과가 있었는지를 만드셔서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재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인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도약을 줘야 되고 어떤 게 패키지를 줘야 되고 이런 것 있잖아.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것 없이 무턱대고 전년 대비해서 100% 이렇게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와서 달라고 하면 이것을 덜컥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요.

○이인선 위원 조금 더 보자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소위원장 정일영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인 뭘 하나 만들어서……

○이인선 위원 주세요.

○소위원장 정일영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 한 것, 작년에 한 것들.

○김태년 위원 방금 보고한 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드려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쉽게 이렇게 쪽 정리된 자료들, 어떻게 집행이 됐고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있으니까 정리하면 되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0번입니다.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재정전략기획 시책 수립 및 제도연구,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의 성과지표도 재정전략 기획과 무관한 단순 열린재정 연간 이용자 수로 설정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 사업의 예산안 1억 96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감액의견이 있고요. 더불어 부대의견안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의 성과지표가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건전성 관리와 연관되

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사업은 국가재정전략회의 준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국내외 재정협력강화 이런 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정전략회의 준비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집행률 보면 22년에 95%, 23년에는 83%, 24년에 84% 해서 집행률이 높습니다. 다만 올해가 현재 56%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년에 다시 또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지 않은 걸 갖고 불용률이 높다고 해서 감액하면 좀…… 저희들은 내년에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지표와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단순 열린재정 연간 이용자 수는 이게 각 항목 안에 보면 A, B가 있는데 A의 재정전략 기획 운용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B,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성과지표입니다. 이것 관련 성과지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만족도라는 별도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랑 이 지표랑 혼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는 잘 정리돼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은 이인선 위원님만 오케이 하면 되겠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김태년 위원 올해는…… 읽어 보니까 알겠네요.

○이인선 위원 이것 보면 알겠는데 아까 방금 90%다, 80%다 하는 게 이 표에는 없는 상황인데 전체로 이것만 봐서는 아까처럼 이게 제대로 건전성하고 연관이 없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의견을 남겼고요.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국장님 오셨네요. 그것 나중에 갖다 주세요, 80%.

○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 장문선 재정정책국장 장문선입니다.

그 성과지표하고 내용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인선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이것은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 있나요?

○김태년 위원 위원님, 여기 보니까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인선 위원 제대로 하라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부대의견은 빼도 되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부대의견은 성과지표로 하는 게……

○김태년 위원 이것은 그냥 통과시켜요.

○이인선 위원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나한테 꼭……

○소위원장 정일영 통과시키고 이인선 위원님께 잘 설명드리십시오.

○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 장문선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재정 운용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 및 전용 플랫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플랫폼 운영비가 2026년도에 2배 증액되었으나 성과대시보드, 사후관리 모듈 등 핵심 기능 개선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증액 근거가 미흡하므로 플랫폼 운영비 증액분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것은 예산 증액과 관련된 제안을 받는 항목만 있는데 이번에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서 추가로 더 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걸 하면서 전반적으로 플랫폼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같이 있고 그 외에도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쓰는데 국정원에서 보안을 좀 더 강화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보안성 강화를 위한 도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도 이인선 위원님이 오케이 하면 되겠네.

○이인선 위원 김영진 위원이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부대의견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대의견은 저희가 수용 가능합니다.

○이인선 위원 어쨌든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증액하면 좋겠는데 이게 가다가 예산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예산은 원안 하고 부대의견은 수용하고.

○박성훈 위원 국민참여예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 장문선 사실은 그간 참여예산이 지방 쪽에 많이 하면서 이 쪽은 조금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7월 달에 국민제안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의견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국민제안을 증액뿐만 아니라 지출 효율화, 제도개선, 기타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하고 리뉴얼을 하는 한편 여기 예산에는 또…… 이게 민간 클라우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자원관리원 화재하고는 별건이긴 한데 민간 클라우드를 쓰는 대신에 보안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은 국장님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그 자료 하나 만들어서 박성훈 위원한테 한번 보고하십시오.

○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 장문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하여튼 보니까 조회수는 굉장히 저조해요. 참여가 저조한데……

○박성훈 위원 제가 기재부에 있을 때 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활용이 잘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돈을 다시 또……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거나 또는 새로운 인프라에 돈을 넣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 건지……

○김태년 위원 기재부가 지금까지 의지가 없었구면. 국민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의지 부족이었구면.

○소위원장 정일영 잘못했다고 하세요.

○**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 장문선** 잘못했습니다.

○**이인선 위원** 어쨌든 6억에서 11억으로, 증액이 많아요.

○**김태년 위원** 이걸 반성부터 하고 해 달라고……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은 받아들이고……

○**김태년 위원** 아니, 반성을 전제로.

○**소위원장 정일영** 아까 잘못했다고 했어요. 했으니까……

○**이인선 위원** 아니, 진짜 이것 제대로 안 하면 다음에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감액 합니다.

○**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 장문선** 내년부터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장문선 국장이 잘할 겁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신뢰를 하시네.

자료를 하나 박성훈 위원님께 드리고.

○**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 장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0페이지,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불용 규모도 커지는 추세이므로 예산 절감 등을 감안하여 46억 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내년 예산은 휴·퇴직자까지 다 감안한 인건비를 반영하였고요. 사무실 임차료, 시스템 유지보수, 인프라 유지보수 등 필수운영경비만을 반영했기 때문에 현안을 유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위원님들.

○**박성훈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2년부터 불용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까지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을 또 내년도에 유사한 규모로 증액해서 가져오겠다는 게, 오히려 다른 부처가 이렇게 들고 왔으면 기재부가 당연히 삭감을 했을 것 같거든요.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런데 불용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불용이. 그러니까 진짜로 애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또는 상황 변화가 생겨 가지고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 장문선** 이직·휴직·퇴직자들이 많아서 불용이 났는데요. 재정정보원은 인건비에서 불용이 생기면 지금 전액 반납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데로 쓰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24년도 인건비를 보시면 281억 7600만 원이고 25년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281억 5800만 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불용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25년도 예산에 사실은 24명을 증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그간 발생했던 불용액에 대한 것은 25년도 예산에서 이미 다 정리를 했기 때문

에 이것은 금년도에 거의 100%, 99%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직급별로 다 계산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한 후에 이·퇴직자까지 해서 한 17억, 18억에 가까운 예산을 빼고 편성해서 이 부분은 실소요를 거의 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이것을 삭감하시면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이게 다 기본 인건비예요?

○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 장문선 예, 이것은 다 인건비입니다.

○김태년 위원 설명이 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정일영 되십니까?

○김태년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오케이. 그러면 원안대로.

○이인선 위원 이걸 천하람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 장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누가 봐도 불용이 많이 됐는데 깎아야 된다는 의견을 적어 놔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23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1페이지입니다.

기재부는 정책연구개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개별 실국 차원에서 별도로 정책연구비를 계상해서 지출 중에 있습니다.

41, 42페이지는 각 개별 사업 실국별 정책연구비 계상 현황이고요. 42페이지 보면, 따라서 천하람 위원님께서서는 개별 사업의 정책연구비는 일괄 삭감하고 이를 정책연구개발 사업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페이지 보시면, 표 하단에 개별 사업에 있는 정책연구용역비 43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 정책연구개발 사업에다가 30억 원을 증액해 가지고, 13억 1600만 원을 전체적으로 감액하되 정책연구개발 사업으로 다, 개별 실국이 아니라 한곳에 이제 몰아 주자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기재부는 주로 정책연구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그냥 막 삭감하시면 저희가 내년에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박홍근 위원 삭감은 아니고 하나로 모으자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설명해 주시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하나로……

○김태년 위원 만약에 삭감 안 하고 하나로 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은 선택적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박홍근 위원 일이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걸 여쭙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게 각 부처에서, 각 실국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걸 다 모았으니 하나의 프로세스가 또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또 배분하는 과정에

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특히 내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직이 분리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묶어 놓으시면 두 부처가 또 나뉘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건 중요한 포인트.

○박성훈 위원 그런데 결국 이 제도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유사·중복 사업들을 각 부서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좀 막아 보려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를 살피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는데요, 제목이 비슷하다고 내용이 같지는 않습니다.

○박홍근 위원 부대의견을 달아 놓으세요, 그냥. 그래서 어차피 각 실국으로 흩어져 있긴 하지만 전체 정책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걸 무슨 담당…… 총괄하는 어디 부서 하나 뒀서 중복 체크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중복성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효율성 점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하계끔 사전에 좀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그렇게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고시키라고 뭔가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통으로 모아 놓으면 기획실에서 관리합니까, 전체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리되면 저희 기조실로 갈 겁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기조실에서? 기획실장 파워도 세지고 좋겠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황순관 귀찮아집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그냥 분산해서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을 좋은 걸로 하나 가져 오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부대의견을 저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4페이지입니다. 연번 24번,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채 발행·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채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25년 3월에 종료되고 현행 예산으로는 안정적인 유지보수에 제약이 있어 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증액이네, 이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증액해 주시면……

○소위원장 정일영 받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박성훈 위원 유지보수 비용 이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2억 4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상 유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유지보수에 드는 비

용이라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보류하시고 근거를 갖고 오시면 나중에 증액시켜 주는 걸로……

○박홍근 위원 왜 정부안에다 안 담고 여기 와서…… 정작 필요한 일이었으면 정부안에다 담아서 가져왔어야지.

○김태년 위원 그렇지. 왜 첨부 증액을 하지?

○박성훈 위원 굳이 안도걸 위원님을 통해서……

○이인선 위원 글썄요. 국채 발행 규모 확대로 시스템 유지관리 범위나 복잡도가 증가하므로 증액이 필요하다, 이 말은 조금 안 맞는데……

○김태년 위원 이것 하여튼 근거 자료 갖고 와서 심사받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2억 4400만 원 증액인데 이것 필요성 자료, 지금 답변을 정확히 못 하시니까……

○박성훈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 논리도 좀 맞지가 않아요. 발행 규모가 확대된다고 해서 시스템의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나나요? 입력되는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 자체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태년 위원 자료 가져와서 심사 다시 받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안도걸 위원님 오라고 그러든지 자료를 다시 만들어 오든지 그렇게. 재논의.

○김태년 위원 아니면 안도걸 위원보고 와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든가.

○소위원장 정일영 25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통상연계형경협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신흥국 내 비관세장벽 등 FTA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통상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신흥국과의 통상연계형경협 확대를 위해 10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증액 건의는 감사한데요, 저희 원안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원안으로 하고 통과합시다.

26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수출·수주 애로를 한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범부처 지원체계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미국 관세정책 및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이것도 그냥 원안으로 하고 가면 되겠네. 특별히 이유도 없네, 10억.

○박홍근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7억 3000인데 왜 내년도는 2억으로 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원단의 운영기간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3월까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박홍근 위원 내년 3월까지만 지원단이 운영되니까 3개월치만 반영한 2억이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래서 저희는……

○소위원장 정일영 2억으로 그냥 가는 걸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3개월 운영비를 더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사업이 있는데 그 하는 사업이 어딘가로 갈 것 같은데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 그건 따로 고민하시고.

27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국고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고금의 전 처리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국고금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e나라도움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BPR·ISP 용역을 위한 일반용역비 20억 증액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안대로 하면 되겠네.

위원님들이 인심 쓴다고 10억·20억 뺄 뺄 그냥……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그 밑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기재부는 e나라도움 운영 등을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에 사업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출연의 경우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조금법상 현장점검 비용을 사업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부정수급 현장점검 업무는 보조금법상 기재부가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일반용역비 등 적정 비목으로 편성한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부대의견 수용하고 예산은 원안대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증액……

○소위원장 정일영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증액을 좀 해 주셨으면……

○박홍근 위원 증액 수용이라고?

○소위원장 정일영 증액을…… 아니, 그러면 설명을 해야지.

왜 20억 증액이 필요한 거예요?

○박홍근 위원 대체로 이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왜 정부 원안에 담지 못하고 국회에 와 가지고……

○소위원장 정일영 국토부도 아니고 기재부가.

마이크 켜고 누구인지 얘기하시고.

핵심만.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입니다.

저희들이 23년도에 단이 만들어지면서 e나라도움에 첨부하는 자료들이나 접속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열여덟 번 정도의 장애가 발생해서 작년에 국가정보자원, 국자원의 정밀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정밀진단 결과 2017년도에 개통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내부망하고 외부망을 단선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자원 지침상 복선이 원칙이어서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안 편성 마지막에 NIA에서 사전검토를 받아라라고 해서 사전검토를 했는데 NIA에서 오래된 것은 서버를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나와서 정부안에는 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결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희 e나라도움이 24년도 교부 기준으로 103조인데요, 그중의 79조가 지자체 보조입니다. 그리고 24조가 민간 보조인데 이 79조, 그러니까 76% 정도 되는 자금은 행안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서를 받는데 그 정산보고서가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잔액도 반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지적이 나왔고 올해도 지적이 나왔는데 미반납 잔액이 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조사를 해 봤더니 1조 43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 위에서는 원천적으로 미반납이 없도록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저희들이 내부에서 검토하기를 시스템도 노후화됐고 지자체 보조사업 까지 e나라도움을 쓰도록 하게 하려면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정일영 국장님이 하도 길게 설명해 가지고……

○박성훈 위원 국장님, 사업비가 지금 용역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예, 용역비로.

○박성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BPR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고요, 업무재설계를 하는 거고요. ISP가 정보화전략입니다. 그래서 업무재설계한 것을 정보화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박홍근 위원님이 질문한 건 정부예산 짤 때 넣지 왜 지금 기재위 와 가지고 증액으로 됐냐 그거 아까 물으셨잖아요. 짧게 해요, 짧게.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말씀드렸는데 NIA에서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언제인데요, 그게?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그게 8월 중순 정도.

○소위원장 정일영 예산편성된 다음에 됐냐?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예. 거의 편성 막바지에 빠지게 됐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용역비를 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를 만드는 겁니다, BPR·ISP 용역비가. 정보화사업들은 전부 BPR·ISP를 합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정부안에 담지 못하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과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일반용역비를 증액하는 거거든요.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그 BPR·ISP 용역비입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이인선 위원 설계라든지 구축이라든지 이러면 20억이 이해가 가는데 일반용역비 20억 하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BPR·ISP의 용역 결과가 설계도가 나오는 겁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워낙 전문적인 기술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용역비 20억 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타이밍, 시점을 사실은 정부 정보화사업을, 특히나 e나라도움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을 미리 좀 내다보고, 마침 여기 정부 본예산에, 정부안에 미리 담지 못한 것은 아까 늦게 복선으로 만들어야 된다 등등등등 의견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미리 챙기지 못한 실책은 있어 보여서 아까 그것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지난번 국감에서도 이 부분은 보니까 이걸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각 부처별로 그 이후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고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 통합적인 관리 필요성은 사후적으로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하여튼 미리 그런 것을 정부안에서, 예상하고 정부안에 담아 오지 않아서 제가 보면 오히려 이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국장님, 하나 좀 확인합시다.

국정원에서 지적받은 게 몇 월이야? 한 4월 정도 안 돼요? 이거 국정원 지적받았다 그랬잖아요.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그거는 8월부터 11월까지 정밀진단을 받았습시다.

○소위원장 정일영 국정원한테요?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아니요, 국자원.

○소위원장 정일영 국자원?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위원장 정일영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예, 그 시스템, 이번에 화재 난 그곳

인데……

○소위원장 정일영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예, 거기에 이 시스템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밀진단을 받은 겁니다. 원래 전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연초부터 계속 시스템 에러가 나서 교육부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정밀진단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 최종 결과물이 조금 늦게 나온 측면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한국은행이 국정원에서 받아 가지고 안 좋게 나왔길래 물어본 건데…… 어쨌든 어떻습니까? 복잡하긴 한데 필요한 것 같긴 하고요.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매년 1조 이상이 추가로 남아 있는, 놓고 있는 돈들을 계속 저희들이 현황 파악하면서 끌어오는……

○박홍근 위원 결국 이 일반용역을 통해서 이런 ISP하고 그다음에 BPR을 하고 나면 나중에 본시스템 구축에도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복선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겠네요?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예, 그렇습니다. BPR·ISP 하면 구체적인 예산 소요액이 나옵니다, 설계도도 나오고 그리고 총금액도 나오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한 몇백억 들어가요?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저희들이 e나라도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356억 정도 들었는데 이제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까지 전부 다 그 시스템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정부안에 담지 못하고 급하게 의원 청부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이거를 급하게 넣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저희 시스템은 층이 달랐고요. 2개 층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다만 단선화가 만약에 망가졌을 때 이게 이제 시스템, 이거는 국민들이 다 쓰는 건데 이게 굉장히 사용자가 많습니다. 80만 정도 되는데……

○김태년 위원 아니, 그거는 설비고 지금 이거는 용역비라며.

○박성훈 위원 계속 왔다 갔다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인선 위원 일반용역비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해를 받는 거예요.

○김태년 위원 설명이 막 설비에서 용역에서, 용역에서 설비로 왔다 갔다……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설계도를 만드는……

○김태년 위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위원장 정일영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인정을 하지요.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원안대로.

○박홍근 위원 원안이 아니라 증액.

○소위원장 정일영 증액으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6페이지입니다. 과다산출된 지출구조조정 내역 부적절하다는 총괄적인 의견입니다.

기재부는 26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했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은 첫째, 사업기간이 완료된 사업, 종료된 사업도 지출구조조정으로 넣 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사업명이 바뀌거나 재편된 사업이 지출구조조정 내역에 포함되 어 부적절하다는 의견, 셋째 일회성·단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출구조조정으로 본다 는 지적, 네 번째 출연금이나 총사업비 총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단순 연부액 조정으 로 집행 시기만 바뀐 것에 대해서도 지출구조조정으로 포함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 적에 따라서 부대의견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내신 경로 기재부는 지출구조조정 내역 산출 시 실질적 으로 지출구조조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실적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인선 위원님께서 기재부는 사업기간 종료 및 명칭 변경, 집행기간 지연 등은 실질적인 지출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 부처의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재산출하여 기재위에 제출하고 공개 한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이 부대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본 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한 지출구조조정은 내년도 세입의 불확실성이나 새 정부 국정과제 지출 소요를 감안해서 필요한 자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이 대 부분입니다.

여기 말씀 주신 것 중에 첫 번째로 기후대응기금 사업에서 연구용역 완료됐으니까 지 출구조조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그다음 추가 과제가 있습니다. 이걸 한 다음에 좀 더 디벨롭(develop) 할 수 있는 R&D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 부분을 안 했다는 거는 이 부분에서 우선순 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도 사실은 이름이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원 래 거에서 다르게 완전히 사업 구조를 재편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은 출자도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때 그 시기를 조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ODA 사업 경우에도 연부액을 조정했다는 것은 시기를 조정했고 시기를 조정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한 내용이고 이거 외에도 이 안에는 납입금액 자체를 조 정한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부분은 지출구조조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설명 잘 들었고요.

부대의견 이인선 위원님 안대로 하면 제 생각에는 무지하게 이거는 힘듭니다. 기재부 죽어날 것 같고……

○이인선 위원 힘들 거 있나요? 보여 주세요.

○소위원장 정일영 임이자 의원안이 조금 그래도, 이걸 수정해서도 안 되려나요?

○이인선 위원 과다 계상이 되는 부분은 전체 공개가 어려우면 저한테 이거를 보여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사실 그동안 기재부랑 저희 국회 사이드랑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기준이 틀려 가지고 서로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기준 설정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면 국회에서 그 기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서 내가 같은 얘기인데 기준 설정, 임이자 위원님이 얘기한 게 기준 설정인데 이걸 또 명확하게 칼로 자르듯이는 어려울 거예요.

○김태년 위원 그러면 ‘명확한’만 빼.

○소위원장 정일영 명확한만 뺄까요? 명확한을 빼고 명확하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저희에게 좀, 예산실과 협의를 해 봐야 되니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전체 공개는 못 하더라도 예결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안을 하나 제안을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이게 벌써 수년째 지출구조조정의 목록을 달라 그래서 결국 막판 예산 하면서 양 간사가 정부 엄청 압박해 가지고 본 경우도 있고 못 본 경우도 있는데 또 그게 지출구조조정에 실제 해당되느냐 아니냐 가지고도 참 또 많은 논란을 그동안 해 왔잖아요. 조금씩은 진전되고 있는 건 사실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는 지출구조조정이예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국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납득 안 되는 지점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번 실제 지출구조조정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또는 그 목록을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상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소위원장 정일영 기준을 하나 만들어 오세요.

○김태년 위원 늘 기준은 있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이어서 그렇지.

○이인선 위원 어쨌든 27조 지출구조조정 했다는데 하여튼 대략적으로 보면 한 21조 정도고 나머지 5조, 6조는 잘 안 보이고 그래요.

○박성훈 위원 기준 설정, 기준과 그다음에 국회 보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차관님, 대안 만들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거는 대안을 만들어서 재논의.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8페이지입니다. 금융성채무와 적자성채무 구분 부적절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재부는 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제출 시 금융성채무의 정의를 기존과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응자산이 있어 추가적 재원 조성 없이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에서 적자성채무 외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회계·기금 채무로 정의를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정의 변경으로 금융성채무를 분류할 실익이 없어졌으며 여전히 국가채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24년 결산심사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금융성채무에 대해서 국가채무 상태에 대한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는데 지금 기재부가 갖고 온 예산안 제출 시 금융성채무의 정의 변경은 변경 자체로 인해서 금융성채무로 분류하는 실익이 없어졌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대의견안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금융성채무의 정의 변경으로 국가채무를 구분할 실익이 없어졌으며 여전히 국가채무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성채무를 재구성하거나 그 대응 자산을 재집계 또는 국가채무 분류체계 자체를 재검토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부대의견을 다만 수정을 해서 제안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은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의 성질별 분류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 정도로 하고서 더 만들어 보시지요.

오케이,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5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명세서의 국회 제출 시 국가재정법 규정을 준수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4조는 국유재산 명세서 첨부서류를 제출할 때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해당 연도 말 기준이 아닌 해당 연도 상반기 말인 6월 기준으로 작성해서 국회에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은 예산 첨부서류 작성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안은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수해서 국유재산 명세서 등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출한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추정을 해서라도 내야 된다는 그 법 취지에 저희가 동의하고요. 그래서 부대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추정을 하게 되면 또 추정이 잘됐느냐 못 됐느냐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하신다고 그러니까, 31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국가재정법 38조제2항제10호에 국가정책적 추진으로 예타가 면

제된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5항에 따라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15개 사업이 전부 올해 예산안에 편성되어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으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보고가 되지 않거나 보고가 늦어져 국회 보고가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52페이지 부대의견안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가정책적 추진으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이 취지에 어느 정도 수긍은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꼭 그 해 예산에 미리 비용의 적정성, 즉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부분을, 왜냐하면 예산편성 직전에 예타 면제가 되면 그 부분을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절차라는 과정에 이걸 다 몇 달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못 담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까지 해서 그다음 해에 작동을 하게 되는데 첫해에 모든 대상을 다 담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총량에 제한이 되면 마지막에, 그다음 차년부터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 대한 조정을 보라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더라도 저희가 갈 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적의 취지는 일정 일리가 있으니 여기 부대의견 중에 ‘편성하지 않고’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저희가 재정 운용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요.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예산을 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고와 관련해서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하기 때문에 그 주어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저희가 수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소관 상임위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부는’ 그러시지요, 그거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도 괜찮네요.

○소위원장 정일영 산업위나 국토위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각자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소위원장 정일영 각자 자기 상임위에?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재정관리국장입니다.

보고 의무는 국가재정법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보고한다라고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박으신다면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주체를 달아 주시

고요.

그리고 한말씀 더 올리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라는 게 사실 단년도 사업 같으면 당연히 적정성 검토를 끝내고서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적정성은 다년도 사업이고 총사업비만 확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진 여부는 확정이 된 거고 다음 연도 예산에 50억을 박을지 100억을 박을지 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단년도 사업은 당연히 연계되는 거지만 다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직결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예타 면제를 하는 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 때문에 예타 면제를 하는데 그거를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 가지고서 할 사업으로 확정된 건데……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말씀하신 취지가.

○소위원장 정일영 차관님, 이것 이렇게 지금 지양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소위원장 정일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 이렇게 대안을 내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박성훈 위원 저는 그것은 괜찮은데요. 이게 기재부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국가재정법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을 보게 되면 결국 예타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이것을 반영을 안 하면 국가재정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게 그 해 예산이나, 전체 사업 기간을 해서 특정 다음 해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 전 기간의 예산 규모는 반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안 그러면 한 해가 늦춰집니다, 예타 면제 사업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 연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요. 국지사업 같은 경우에 타당성 재검토가 안 됐는데 일단 국지사업을 실시하면 그게 타당성 재검토를 해 가지고 안 맞다고 해도 국지사업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별로 약간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지양하고 이런……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지양하고.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다년도 사업인데 일단 시작을 해 버렸고 방금 수석님 말씀처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그 과정에서 결론이 부적정하다고 나오게 되면 이것을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법 조항에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넣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석을 지금 자의적으로 정부가……

○박홍근 위원 그런데 어쨌습니까? 이렇게 예타 면제된 SOC 사업이거나 아니면 이런 사회정책 사업이건 간에 이렇게 예타 면제됐는데 적정성 검토에서 잘못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재정관리국장입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있고요 타당성 재조사가 있고 예타가 있습니다. 예타는 사업 자체를 죽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타당성 재조사는 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거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규모를 봅니다, 적정 규모를.

○소위원장 정일영 하긴 하는데 규모를?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규모 조정만 이루어지거든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지요.

○박홍근 위원 규모만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규모가 부적정하니 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게 그런 취지 아닙니까, 반대로 해석을 하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글썄, 다음 연도까지 영향을 주니까, 장기 사업이니까 그때 조정한다 이런 취지……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령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었을 때 계속 조정했던 것 중의 하나가 통합돌봄 예산이에요. 이미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게 있고 일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고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고, 중요하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적정성 검토 이런 부분이 완료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당장 내년도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현실과 지금 계획에 서로 충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필요성은 저는 제기되고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을 때 국회의 예산심의를 제약하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또 한편에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재정 당국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박성훈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법을 지금 차관님 말씀처럼 명확하게 구체화시켜 놓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박홍근 위원 일단은 그냥 부대의견대로 하시고……

○소위원장 정일영 부대의견을 차관님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으로 해서 수석님이랑 한번 다듬어 보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다음에 교부세.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5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대 필요입니다.

2006년 이후 19년간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9.24%로 동결되었는데 지방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률이 과도해서 국비사업 참여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안은 기재부는 지방교부세율을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인구감소지역 또는 재정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재정자립도 및 세입여건을 반영해 동일 사업이라도 국가보조율을 차등 적용해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비사업 차등 매칭을 제도화한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림이 없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마련을 해서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답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추가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인구감소지역 또는 재정취약 지역에 대한 재정 우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54페이지,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기재부는 동 사업 2026년도 예산안 중 16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재정정보 통합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침에 따라서 예산 요구 전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모두의 재정’ 구축 사업은 예산요구 시한을 경과한 7월 25일에서야 NIA에 사업계획서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정보화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라는 지침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재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관서 예산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모두의 재정’ 사업계획서 검토를 요청하고 이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지양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55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34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본사업과 달리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기재부가 운영 현황이나 추진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업 규모나 이익 배분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본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서 등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에서는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총사업비, 공사비 등 핵심 정보가 비공개 처리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서 부대의견안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각 주무관청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협약서를 비공개하도록 관리하는 등 본사업의 정보공개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선정 및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신뢰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이 취지를 동감하고 수용할 내용이고요. 다만 문구를 조금 수정하고 싶습니다.

맨 앞에 ‘기획재정부는’이 아니고 그냥 ‘각 주무관청은’으로 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는 그 뒤에 가서 ‘사업자 선정 및 심의 과정’ 이 부분에서 기획재정부가 들어가게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조금씩의 문구를 더 다듬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하고 그 문구를 다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 하고 공자기금인데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직……

○**소위원장 정일영** 뭐가 또 남았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56페이지가 저희……

○**소위원장 정일영** 공자잖아. 뭐가 또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새로 저희가 하나, 어제 새벽에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자료……

○**소위원장 정일영** 공자 가기 전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어제 새벽까지 하다 보니까 하나 누락이 돼 가지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별지로 다시……

56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설명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장애인을 법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표와 같이 매년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재부가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는 21년 328만 원에서 24년 7397만 원으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해서 부대의견안은 기재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장애인 고용 노력이 미흡한 경우 자체 예산 절감을 통하여 고용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고용부담금의 관례적 지출을 근절한다라는 부대의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장애인 고용 안 하고 돈만 내려고 그러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공무원하고 비공무원이 있는데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달성을 더 높게 하고 있습니다. 3.8%보다 더 해서 4.3% 하고 있는데 비공무원이 지금 1% 수준으로 말씀하신 대로 미달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채용을 해도 다 퇴직해 버리고 자꾸 그래 가지고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처에서 하는 컨설팅도 참여도 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법정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서요 차관님, 기재부가 우선 330개 공공기관을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을 기재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그분들이 그냥 금방 있다가, 5개월 6개월 있다가 퇴직하는 걸 당연시하지 말고 그분들이 퇴직하는 사유를 연구하고 고민해 가지고 퇴직 안 하하도록 하면서 고용을 계속 늘려 가야 맞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더불어 잘 살아야 될 것 아니야, 행복한 사회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좋아요. 그렇게 문구 조정을 하고 공공기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공자기금 넘어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한 15분 뒤에 가신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10시에 다 나오시나요?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국유재산관리기금이 관심들이 많으셔서 가지고 별지로다가 증액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나오신다면 내일 아침에 그것을 같이 보셔도 되고……

○박홍근 위원 지금 보기 어려워요?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자료는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내일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공자를 잠깐 보고…… 그것을 죽 한번 먼저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어때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국유재산관리기금 정리된 자료를 배포하고 그것을 먼저 봅시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총 75건의 증액사업이고요. 2026년 계획안하고 그다음에 수정안 그다음에 증감액 그다음에 정부 의견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지요. 그러면 되겠네.

엑스포 이게 동의 안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5번, 아산세무서 청사 건립은 정부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왜?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국유재산조정과장입니다.

아산세무서는 현재 임차 청사인데 협소하지 않고 세무서에서도 지금 이주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박홍근 위원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소위원장 정일영 하여튼 이것은 차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페이지입니다. 18번, 서울 종로경찰서 청운파출소 이전 신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은 또 왜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저희가 기준을 파출소는 노후도하고 협소도를 보는데 여기가 지금 노후도는 33년이지만 협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 노후도 얼마예요? 무슨 등급이에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안전등급은 지금 여기는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등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소위원장 정일영 안전등급을 아예 측정도 안 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그러니까 2개를 충족하면 되는데 하나만 충족한 상태라서 저희가 뺐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태호 간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왜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지.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4번입니다. 충북 충주경찰서 호암지구대 이전 신축입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이 건도 노후도는 23년입니다. 협소도는 좀 협소하지만 노후도가 안 돼서 저희가 미반영시켰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협소하지만 노후도가……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23년밖에 안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정일영 23년이면 얼마 안 된 건가?

○이인선 위원 40년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30년이 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30년, 최소한?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여기 전부 다, 박수영·박대출·유상범·윤영석·임이자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이 막 그런 얘기 해도 괜찮은가? 많은 위원님들이……

○이인선 위원 상관없어요.

○소위원장 정일영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다음 것 또 설명 들어 봅시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페이지, 46번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이전 신축입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이 건도 노후도가 27년이고 협소도는 37%여서 협소도는 되지만 노후도에 충족하지 못해서 저희가 빼놓았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노후도가 27년이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예.

○소위원장 정일영 협소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37%입니다. 30% 이하가 되면 가능한데 노후도가 30년이 넘어야 됩니다.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해서……

○김태년 위원 협소는 충족이 되고?

○소위원장 정일영 협소는 되는데 노후도가 3년이 부족하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예.

○박성훈 위원 과장님, 이게 30년 기준은 딱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저희가 정부 예산편성할 때는 안전도, 협소도, 노후도 세 가지가 충족했어야 되는데 국회 기재위 심의단계에서는 셋 중에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 걸로 해 왔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는 상태라서…… 기준을 많이 완화해서 대부분은 다 반영하는 걸로 해 왔습니다.

○김태년 위원 작년에 많이 완화해 왔어요.

○소위원장 정일영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태년 위원 하도 안 해 주려고 그래 가지고 기준을 바꿨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페이지, 59번입니다. 양주 경찰수련원 신축입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경찰수련원은 전국에 8개가 있고 4개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대체되는, 남원경찰수련원은 변산수련원을 대체하는 수요고 보령은 대천수련원을 대체하는 거라서 반영을 했고 양주와 당진은 이미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미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뭐라고요? 어째서?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양주와 당진은 이미 많이 있고 전국에 수련원이 12개나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충분하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예. 그리고 남원하고 보령은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하는 거라서 그것은 반영을 했고 이것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정일영 다 똑같은 거예요? 양주……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당진.

○소위원장 정일영 당진? 우리 고향인데.

2개예요? 2개일 필요 없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예.

○소위원장 정일영 같은 이유로?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예.

○소위원장 정일영 당진수련원을 왜 안 들어 주고……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보령이 지금 대천에 있는 것을, 대천수련원을 없애고 보령에다 새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정일영 보령군에 대천이 있는데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지금 대천수련원이 있는데……

○소위원장 정일영 대천읍에?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예, 대천 지역……

○소위원장 정일영 보령군이 대천이에요. 그런데 무슨……

○김태년 위원 이름이 대천수련원.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같은 지역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같은 지역에?

○김태년 위원 아마 해수욕장하고 가까운가 보지.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가 보다.

차관, 그렇다는 이유고.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다음에 6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62번입니다.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입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이 사업은 산림청 일반회계에 개보수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복이어서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중복된다?

그다음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3번, 국립 서해안 산불방지센터 설립입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부지가 지금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반영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4번, 제주지역 소방심신수련원 신축입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설계비가 요청이 됐는데 설계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고 만약에 비목을 공사비로 하면 가능합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공사비로 해서 해 줘요. 우리 소방관들…… 이것 해야 돼.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예, 알겠습니다. 비목을 설계비에서 공사비로 하면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이것 진성준 위원님이 잘 몰랐나 보다. 그러니까 설계비는, 이미 설계는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비로 바뀌서 태우면 되겠네.

○김태년 위원 이것 소방관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소방관들 고생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8번, 제주 서귀포 복합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이 사업은 경찰서하고 세무소를 복합개발을 해 보자라고 해서 제안된 사업인데 이것은 기재부가 캠퍼스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런 것에서는 계획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기재부하고 캠퍼스하고?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예, 기재부하고 캠퍼스가 하는 복합개발사업인데

저희 쪽에서는 복합개발 범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좀 시기상조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또 한 번 체크해 볼게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70번,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센터 신축입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국제협력센터는 직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제협력과가 있는데 과를 센터로 확대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내용인데 이전 직제 협의가 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직제가 우선 돼야 된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2번, 충남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신축입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이것도 동일하게 직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도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다음에 의정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3번, 법무부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 신축입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검찰청은 지금 정부 조직개편으로 폐지가 되는 상황이라서 검찰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불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신축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검찰청 대신 공소청을 만들 때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공소청 문제로 다시 정리를……

○소위원장 정일영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홍근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박성훈 위원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예비비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알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마지막으로 74번,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이전 신축입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위원장 정일영 같은 이유예요, 이것도?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예, 동일 사유입니다.

○박홍근 위원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3단계로 할 거냐, 2단계로 할 거냐에 따라서 청사 수요가 좀 달라지거든요.

○소위원장 정일영 정확히 6시 15분입니다.

대체로 많이, 동그라미가 많기는 하네.

○김태년 위원 작년에 기준을 바꿔 놔 가지고……

○소위원장 정일영 작년에 상당히 진도가 나가다가 다 얹어져 가지고 좀 그랬는데……

○김태년 위원 뭐라 뭐라 하길래 기준을 바꿔 버렸잖아.

○소위원장 정일영 이 엑스 자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 보시고요. 보시고 또 특별히 이견이 있다 하면 내일 아침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열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김태년 박성훈 박홍근 이인선 정일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미래전략국장 천재호

국고국장 강윤진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대외경제국장 민경설

개발금융국장 문지성

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조세개혁추진단장 김건영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이용욱